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. 1. 9 선고 2018가단195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절차이행]

전 문

원고A

피고B협동조합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98. 11. 24. 접수 제111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김태현

별지